미 기획

변화 위에 겹친 변화, 제도는 여전히 따라오지 못했다 : AI 기본법과 방송심의가 드러낸 공백들

정민경 미디어오늘 기자

목차

- 1 AI가 뉴스를 학습해도 콘텐츠 보상은 없다? AI 기본법에 빠진 것
- 2 EU 인공지능법에는 있지만 국내 AI 기본법에는 빠진 이유
- 3 저작권 침해. AI가 만든 결과물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을 살펴야
- 4 방송심의 제도.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응답할 수 있나
- 5 OTT서 만들고 지상파서 튼 뒤···"어떤 버전이 더 나았나"

요약

이 글은 4월과 5월에 각각 개최된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학회 두 세미나를 바탕으로, AI 기본법의 한계와 기존 방송심의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룬다. 겉보기엔 상이하고 동떨어진 주제로 보이지만, 두 세미나가 제기한 질문은 닮아있다. 글로벌 OTT의 출연 이후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서 AI라는 또 다른 급격한 변화가 더해진 지금,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방송 산업의 현행 제도들의 문제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AI 기술의 진보와 미디어 생태계의 재편 속도를 감안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OTT의 부상으로 콘텐츠 유통 환경은 이미 대대적인 전환기를 거쳤고, 최근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창작 생태계 전반에 또 한 번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변화에 변화가 더해지는 이 시점에서, 방송 콘텐츠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또한 재검토가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개최된 한국방송학회 및 한국언론학회 특별세션의 두 세미나를 바탕으로, AI 관련 입법의 한계와 기존의 방송 심의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겉보기엔 상이한 주제로 보이지만, 두 세미나가 제기한 질문은 닮아있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현행 제도는 과연 여전히 유효한지 말이다. 기술이 제도를 앞지르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창작자 보호도, 방송 심의도, 나아가 방송 산업의 기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AI 기술의 진보와 미디어 생태계의 재편 속도를 감안해 입법과 규제의 균형감각에도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1, AI가 뉴스를 학습해도 콘텐츠 보상은 없다? AI 기본법에 빠진 것

마이크로 트렌드(micro-trend)의 시대다. 누구나 아는 하나의 '메가 트렌드'가 시장을 이끌던 시기는 지나고, 이제는 개별 소비자의 취향에 기반한 작고 짧은 유행이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올해 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중심으로 확산된 '지브리풍 이미지'는 오랜만에 등장한 전 사회적 규모의 유행이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3월 말,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을 지원하는 모델이 탑재된 챗GPT의 이용자는 전달 대비 122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미지 생성이 크게 유행하면서,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도 대중적인 토론 주제로 급부상했다.

지난 4월 18일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의 한국 방송협회 후원 세미나 'AI 시대,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의 모색'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박희경 MBC 법무팀 차장(변호사) 역시 챗GPT의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희경 변호사는 "최근 AI 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하고 있다. 저작권과

한국방송학회 2025 남편 정기학술대회

한국방송학회 독발보인
AI 시대,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의 모색
2025. 4. 18.(급) 12:45-14:15
전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611호

[그림 1] 한국방송학회 방송협회 세션 포스터

출처 : 한국방송학회

관련된 쟁점은 그보다 항상 한 걸음 뒤에서 가는 경향이 있다"며 "AI의 발전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는)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선제적인 저작권 논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입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서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지브리 화풍'으로 촉발된 저작권 논쟁이 방송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박희경 변호사는 방송 사업자의 매출 구성을 설명하면서 "원래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경우, 광고나 협찬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루었다. 그런데 지금은 재송신이나 프로그램 판매와 같이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에서 상당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 매출은 다시 한번 방송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예능이나 드라마 저작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매출이나, 저작권을 지키는 부부은 방송 산업의 지속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논쟁이 방송 산업의 주요 수익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문 제가 방송계의 주요 논점이 된 배경이다.

2. EU 인공지능법에는 있지만 국내 AI 기본법에는 빠진 이유

박희경 변호사는 우선 AI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와 관련된 현재 입법 상황을 소개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은 EU 이사회가 승인한 EU 「인공지능법」(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이하 'EU AI Act') 보다 시행 시점이 빠르다. 박희경 변호사는 EU AI ACT에는 'AI OFFICE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범용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Train Act 등 '학습 데이터 공개'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국내법에선 학습 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조항이 누락됐다고 지적한다.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와 관련된 조항의 필요성은 실제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됐지만, 이번 인공 지능기본법에는 포함되지 못한 채, 필요시 후속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실제로 제41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24.12.17)을 살펴보면,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AI투명성 의무 확보에 대한 조항 내에 창작행위에 관계되는 AI의 개발과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만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향미국장은 "창작자들이 이 학습데이터와 관련해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서 활용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AI 업계도 저작권을 지켜야 된다는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서 준수하고자 하는 부분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회의에서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리는 "해당 부분은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기본법부터 제정하고 후속입법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게 전체회의에서의 입장"이라고 말한다. 정청래 위원장

도 "일단 해보고 발생하는 문제는 개정안으로 해결될 문제지, 지금 시작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잡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AI 진흥을 저지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박희경 변호사는 이 논의 과정에 대해 "우선 빨리 입법을 시켜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입법 과정에서 강조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소외되었다"며 "EU의 AI ACT와 미국의 「2024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안」(Generative Al Copyright Disclosure Act of 2024) 등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현행법에서 빠진 데이터 투명성 의무 부과, 정당한 보상 방식 등 저작권 보호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U의 AI ACT에는 'AI사업자는 주요 데이터 수집 또는 집합을 나열하고 사용된 다른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를 포함한 정당한이해관계자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뉴욕타임즈가 OPEN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정 이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 미국과 유사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선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공정 이용' 주장을 배척한 톰슨로이터와 로스 인텔리전스의 1심 판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소개했다. 지난 2월 11일 미국에서 통신사 톰슨 로이터의 전 경쟁사인 로스 인텔리전스가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를 복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언급했다. 앞서 톰슨 로이터는 2021년 로스 인텔리전스가 톰슨 로이터의 자사 법률 검색엔진웨스트로(WestLaw)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AI 학습을 위해 웨스트로가 제공하는 헤드노트(판례요약)을 활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희경 변호사는 "관련 판결에서 로스의 목적이 상업적 이용 목적이었으며, 로이터와 직접 경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공정 이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기사나 영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해 서비스한다면 사람들이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AI 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보게 되면서, 인간의

창작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박 변호사는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언급은 되었으나 빠져버린,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논의가 향후 개정안에서 시급하게, 가장 선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가 방송 콘텐츠 산업의 '수익'에 관련돼서만 논의된다면 많은 이들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희경 변호사가 언급한, '인간의 창작 영역 축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AI 산업 진흥을 위해 저작권을 소홀히 한다면, 뉴스 저작권뿐 아니라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저작권자, 즉 창작자의 권리는 소외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힘든 '오리지널' 창작을 할 것이냐는 말이다. 박희경 변호사 역시 "(이러한 저작권의 소외 현상은) 향후 인간 지성의 위축을 초래해서 미래 인간의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창작과 관련된 산업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I의 '카피' 역시 '오리지널'이 있어야 하는데, 오리지널은 없고 '카피'만 등등 떠다니는 세상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저작권 침해. AI가 만든 결과물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을 살펴야

이날 토론에는 실제로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KCL 김태경 변호사가 참석해 소송에서의 쟁점까지 소개했다. 김태경 변호사는 최근 KBS·MBC·SBS 지상파 3 사를 대리해 네이버를 상대로 AI의 데이터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과 언론의 갈등이 이어지는 국내 최초 사례로, AI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를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한 AI 기업에 대해 언론사들이 법적 대응을 한 주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림 2] 한국방송학회 방송협회 세션 토론 장면



*좌측부터 표시영 교수, 윤성옥 교수, 박희경 변호사, 도준호 교수, 김태경 변호사, 이대희 교수, 최영진 과장 출처 : 한국방송학회

김태경 변호사는 "지금 법처럼 AI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면,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가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된다면, 콘텐츠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AI 사업자의 학습용데이터에 어떤 저작물이 사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저작권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입증 책임'을원고가 지게 되면서 부담이 상당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AI 기업은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 영업 비밀로 취급하게 될 것이고, 사실상 독과점적인 지위를구축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한정적이기에 AI 산업과 관련한 진흥에 있어 몇몇 사업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장 공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태경 변호사는 AI 저작권 문제에서 'AI가 산출한 결과'가 저작권을 침해하느냐 마느냐에만 매몰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글 초반에 언급한 '지브리풍 그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을 잠깐 돌아보자면, '특정 그림'이 아닌 '그림 스타일'은 저작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태경 변호사는 "최종 산출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AI의 학습 과정 자체가 침해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또한 그 학습 결과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서 공정 이용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만을 보고 저작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전체적인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EU나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가 빠진 채 시행되는 것일까. 이날 학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어쩌면 직접적으로 말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야기를 짚어냈다. 윤성옥 교수는 "결국 국내의 AI법은 미국과 유럽과는 굉장히 다르게, AI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능이 목적"이라며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이기 때문이다. 아마 과기정통부가 계속 이 입법을 주도한다면 산업 진흥이 주요 목적일 수밖에 없다. 산업 진흥은 과기정통부가, 저작권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여를 하는데 소관부처가 공통으로 바뀌어야 입법 방향도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런데 '왜 AI를 진흥해야 할까'를 생각해본다면, 산업 발전은 사실 수단"이라며 "결국 AI 진흥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부처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 역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비옥한 땅이 있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 땅은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그 땅에서 과실만 따 먹으면 누가 그곳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짓겠느냐"고 물었다.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않고 산업 진흥에만 매몰된다면,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AI 기술이 단순히 기존 콘텐츠를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요건 등에 대한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령을 추가해 나가면서 이 같은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 봤다. "예를 들어 이 세미나의 토론문을 만든다고 할 때, 인간인 저는 몇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AI는 10분도 안 되어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인간의 창작물과 AI의 산출물을 구분하지 않으면 결국 시장에는 AI의 산출물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산출물은 AI의 산출물이라고 표기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대희 교수는 "다만 모든 작품에 일일이 AI로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 작품성이 떨어지게 되고, 표현의 자유가 억제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서 관련된 표시 방법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표시영 강원대 교수는 앞으로 펼쳐질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을 앞서 이야기한 AI의 학습 데이터 관련 저작권 문제와 AI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로 꼽으며 토론을 정리했다.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 표 교수는 '공정 이용' 개념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런데 무엇이 공정 이용이고 또 무엇은 공정 이용이 아닌지는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르고 법원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금까지의 판례들을 종합해서 보면 최근 AI 학습의 책임 범위가 확장되고 기준도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AI 사업자들이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리했다.

표 교수의 토론은 'AI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까지 펼쳐졌는데 이 역시 앞으로 입법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표 교수는 "미국과 EU에서 있었던 저작권 판례등을 살펴보면 AI가 만든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5개의 공통분모가 있었다"며 5가지 기준을 설명했다. 첫째, 콘셉트와 기획 단계에서 창작물의 표현 수준까지 인간이 아이디어를 설계했는지, 둘째, 선택이나 배열 단계에서 데이터나 소재를 인간이 창의적으로 골랐는지, 셋째, 인간이 창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했는지, 넷

째, 수정 및 편집 단계에서 AI 생성물을 선별해서 인간이 재수정하고 또 편집했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을 인간이 결정했는지이다. 표 교수는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면 AI로 만든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높은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의 마지막 차례로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은 문체부에서는 2023년 부터 AI 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 산출물 활용 부문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진 과장은 "학습 데이터 제도 분과는 관계 부처인 과기정통부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AI 사업자의 영업 비밀과의 연관성 때문에 논란이나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저 작권 분야는 FTA 등 타국과의 관계와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외 동향도 활발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AI 시대의 방송 산업은 단순한 기술 수용을 넘어, 저작권 질서의 재정립이라는 제도적 기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공통적이었다. 지금과 같은 법적 공백은 'AI 산업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창작자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물론 문체부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입법 공백은 조만간 수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방송심의 제도,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응답할 수 있나

기존의 방송 규제 체계 역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 이어지는 한국언론학회 특별세션에서는, 방송심의 제도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제도적 과제를 짚어본다.

두 번째 참여한 학회는 5월 17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콘텐츠 혁신과 창의성 강화를 위한 방송심의 개선 방 안'이라는 특별세션이다.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배정훈 SBS PD, 이남표 용인대 교수, 최 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림 3] 한국언론학회 방송협회 세션 포스터

출처 : 한국언론학회

발제를 맡은 최우정 교수는 현재 방송심의 제도와 관련해 "(6·3대선 이후)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문제가 될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사실 이 문제는 최근의 문제도 아니며, 결정권자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이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이라는 심의 기준에 대해 최우정 교수는 "심의 기준이 팩트가 아닌 가치 판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심의 단체들이 권력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제상으로 집권당에 유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미디어 개혁'을 하겠다는 당이 집

권하게 되어도 집권당에 유리한 제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특히 '공익'과 관련된 판단이나 음란 기준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며, 심의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강조했다. 최 교수는 "규정상 심의위원 자격을 적극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극적인 결격 사유만 나열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결격 사유 외 전문성 보장 조항은 결여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방송심의는 OTT나 개인방송사업자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기존 방송 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최우정 교수는 "역차별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누군가는 심의에서는 배제되어 돈만 벌고, 누 군가는 엄격하게 제한되 시장에서 힘겹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들 때문에 최우정 교수는 결국 심의 제도를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방송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 차원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정 교수는 "방송사에 맡 겨놓는다면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우려점도 나오지만, 정부 행정기관 차원의 심의 가 '최악'이라면 사업자 중심의 자율심의는 '차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업자 중심의 자 율심의로 가되, 행정기관은 이 같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충하는 방향으로 가 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림 4] 한국언론학회 방송협회 세션 토론 장면

^{*}좌측부터 김희경 수석연구위원, 박성순 교수, 최우정 변호사, 홍원식 교수, 배정훈 PD, 이남표 교수, 최영재 교수 출처 : 한국방송학회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성순 배재대 미디 어콘텐츠학과 교수, 배정훈 SBS PD, 이남표 용인대 교수,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공통적으로 '방송 사업자 중심의 자율심의'라는 방향에는 공감을 표했다. 김희경 공공미디 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신 심의의 경우 개인 인격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정보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율규제로 삭제하는 데 문제가 없고,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하느 냐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방송심의는 헌법적 워리부터 목적, 시대상의 변화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각 사가 심의 규정을 작성하게 하 고, 승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심의를 검토하는 정도의 역할만 맡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누군가는 공영방송이나 지상파가 있어야 되느냐고 의문을 표한다. 그러나 정보 격차 문제 등 방송의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심의 를 통해 지켜야 할 영역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율규제로 가되, 사업자가 제대로 자율규 제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 책임은 훨씬 크게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남표 용인대 교수는 "현재 방심위의 제도나 법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은 100% 동의하지만, (현재의) 방송심의가 있기 때문에 방송사 내부에서도 현재 엄격하게 심 의실이 있고 검토를 하는 것일 수 있다. 행정 처분이라는 강제성이 없다면 누가 지금처럼 심 의를 두려워할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의 심의 제도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방송 사업 자의 자율심의로 제도를 변경했을 때, 지금처럼 사업자들이 엄격하게 내부 심의를 하겠느 냐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5. OTT서 만들고 지상파서 튼 뒤···"어떤 버전이 더 나았나"

반면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배정후 SBS PD는 혀업에서 직접 경험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현재의 심의 제도가 부른 문제를 밝혔다. 배정훈 PD는 2023년부터 준비해 지난해 웨이브를 통해 '국가수사본부'라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 바 있다. 이후 이 콘텐츠를 배 PD가 속해있는 SBS에서 판권을 구매해 방영했다. 배 PD는 "이는 기존 콘텐츠 제작 순서와 는 반대 방향이었다. 보통은 PD가 속한 방송사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OTT가 사가

109

는 순서인데 SBS PD가 만든 콘텐츠를 SBS가 사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험이었다"라며 "다만 처음 오리지널을 제작한 것이 OTT였기 때문에, SBS에 편성할 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심의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말했다. 배 PD는 "이 경험에서 '어떤 심의 규정을 받은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연말 한 시상식에서 (SBS가 아닌) 웨이브의 '국가수사본부'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림 5] 2024 방통위 방송대상을 수상한 웨이브 〈국가수사본부〉

출처 : 방통위

이어 배정훈 PD는 "제작진들은 콘텐츠를 만들며 심의팀을 통해 의견을 받고, 일상적으로 교육도 받는다. 법무팀의 의견까지 반영하는 내부적인 심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고, 내부적인 의견을 듣지 않는 제작자는 쉽게 보기 어렵다"며 "이미 방송사 내에는 자율심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방송심의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제도적 긴장이 동시에 제기됐다. 방송사 내부에는 이미 일정 수준의 자율심의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제도의 압력 속에서 유지된 결과일 수 있다. 제작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실무자와 제도 전반을 조망하는 연구자 모두 자율심의로의 전환에는 공감했지만, 그 이상이 당장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선도 읽혔다. 자율성과 공공성,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심의 제도는 여전히 실현가능한 균형점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AI 저작권과 방송심의, 얼핏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논의는 결국 '변화하는 창작 환경에 제도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라는 공통의 과제로 수렴된다. 제도가 산업 진흥에만 방점을 둘때, 창작의 동기와 문화적 기반은 쉽게 소외될 수 있다. 각 세션의 전문가들은 산업 진흥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을 때, 본질인 '콘텐츠 창작'의 욕구가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산업적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가 보호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되물어봐야 하는 시점이다.